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A94BL)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70(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94BL)  
 ■ 공급대상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25층 / 18개동 / 총 1,227세대 중 **민영주택 3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총 1,227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907세대(전용면적 74㎡ 82세대, 84㎡ 825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320세대(전용면적 95㎡ 222세대, 115㎡ 98세대)**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주요사항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주택개발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세대수의 30%</li> <li>경기도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10.13 이전)</li> <li>공급세대수의 20%</li> <li>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4.13 이전)</li> <li>공급세대수의 50%</li> <li>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li> </ul>	<p>「주택법」 제57조 등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p>	<p>일반공급 자격요건 충족 시 주택소유여부 무관 청약신청 가능</p> <p>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미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발표일로부터 <b>재당첨제한 10년</b></li> <li>당첨자발표일로부터 <b>전매제한 3년</b>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li> <li>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b>거주의무기간 5년</b></li> </ul>
--	---	---	---

###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①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신청 시 ①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분양유형별 청약가능 주택형

국민주택 전용면적 74㎡, 84㎡	민영주택(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전용면적 95㎡, 115㎡
-----------------------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에 의거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단만, 해당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이 적용됩니다.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분양사무실 운영 안내 사항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elife.co.kr>)으로 운영됩니다.
- 각각검증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예약 후 분양사무실 방문이 가능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 인원은 당첨자 및 계약자(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와 동반 1인으로 제한되며, 방문은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여 분양사무실 방문가능기간(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한 점 양지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elife.co.kr>)으로 운영되며, 청약 신청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elife.co.kr>)을 통한 공급주택별 평면도 등을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실물 유니트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써, 홈페이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국민주택 84A, 84C, 민영주택 95A 타입일 해당) 또는 주택별 평면도 등을 통하여 청약 전 확인하시어,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요】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률 72.74%)하는 아파트입니다.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23년 9월말 기준 공정률 72.74%) 이 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을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금액 외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써 공정 진행상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화성동탄2 A94BL) 아파트에 대해 무량판구조 등 구조 설계와 관련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 없음'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점검기간 : 2023.08.03 ~ 08.18
- ※ 점검기관 : 시공사 디엘이앤씨 / 감리단 ㈜유담엔지니어링 / 안전진단전문기관 ㈜일구조엔지니어링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분양사무실 내 분양상담 전화(031-378-1227),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3(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사업주체 : 공공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 민간사업자 - 디엘이앤씨,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신동아종합건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이 포함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며,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주 의무 :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 사업주체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단,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거주 의무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매입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연체금 등 공제할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 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 의무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 의무대상자 등은 모든 세대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대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대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대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대상제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대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분양대상제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자발표일부터 10년간 대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주택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10.1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3.04.1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해당지역 대상자만 해당)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이들말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 가목)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도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영주택	세대주 요건	-	적용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할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공인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 가능(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중 테라스 세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보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속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분양사무실 현장 접수 시에는 사업주체에서 요청하는 자격 증명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분양사무실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는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소멸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및 분양권 전대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사업주체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II) 계약서 포함)과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불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지품목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절차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통보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연락, 주소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3.10.23(월)	2023.10.24(화)	2023.10.25(수)	2023.11.01(수)	2023.11.20(월) ~ 2023.11.23(목) (10:00~16:00)	2023.12.05(화) ~ 2023.12.07(목) (10:00~16:00)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탄레이크파크 자연&amp;e편한세상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li> <li>■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지참 방문)</li> <li>※ 사전방문예약 신청일정 추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li> <l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안내 예정</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10:00~14:00)</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탄레이크파크 자연&amp;e편한세상 분양사무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그린비아스타 1층 1035호)</li> <l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일정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또는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70(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94BL)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25층, 18개동, 총 1,227세대 중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320세대  
[특별공급 41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시기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2023000434	01	095.5604A	95A	95.5604	26.5387	122.0991	56.7785	178.8776	72.5911	162	16	5	21	141	6
		02	095.4257B	95B	95.4257	26.8020	122.2277	56.6985	178.9262	72.4888	32	4	1	5	27	2
		03	095.4485C	95C	95.4485	26.8063	122.2548	56.7120	178.9668	72.5061	28	2	1	3	25	2
		04	115.8141A	115A	115.8141	31.8046	147.6187	68.8126	216.4313	87.9766	48	4	1	5	43	2
		05	115.7375B	115B	115.7375	32.2550	147.9925	68.7670	216.7595	87.9184	50	6	1	7	43	2
합 계											320	32	9	41	279	14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95.5604A	095.4257B	095.4485C	115.8141A	115.7375B
약식표기	95A	95B	95C	115A	115B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 X 0.3025)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소점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하실 수 없습니다.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15%)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차(5%)		2차(10%)
										2024.01.30		2024.03.29
95A	3135동 (1호,2호) 3136동 (2호) 3139동 (2호)	1층	4	174,100,000	294,454,545	29,445,455	498,000,000	24,900,000	24,900,000	49,800,000	398,400,000	
		2층	12	174,100,000	304,090,909	30,409,091	508,600,000	25,430,000	25,430,000	50,860,000	406,880,000	
	3층	12	174,100,000	308,909,091	30,890,909	513,900,000	25,695,000	25,695,000	51,390,000	411,120,000		
	4층	12	174,100,000	313,727,273	31,372,727	519,200,000	25,960,000	25,960,000	51,920,000	415,360,000		
	5~9층	50	174,100,000	318,545,455	31,854,545	524,500,000	26,225,000	26,225,000	52,450,000	419,600,000		
	10~20층	57	174,100,000	323,363,636	32,336,364	529,800,000	26,490,000	26,490,000	52,980,000	423,840,000		
	21층 이상	9	174,100,000	333,000,000	33,300,000	540,400,000	27,020,000	27,020,000	54,040,000	432,320,000		
95B	3137동 (2호) 3138동 (2호) 3141동 (1호,2호,3호,4호) 3147동 (1호) 3148동 (4호)	1층(T)	6	174,100,000	305,818,182	30,581,818	510,500,000	25,525,000	25,525,000	51,050,000	408,400,000	
		1층	2	173,855,000	290,768,182	29,076,818	493,700,000	24,685,000	24,685,000	49,370,000	394,960,000	
	2층	2	173,855,000	300,313,636	30,031,364	504,200,000	25,210,000	25,210,000	50,420,000	403,360,000		
	3층	2	173,855,000	305,040,909	30,504,091	509,400,000	25,470,000	25,470,000	50,940,000	407,520,000		
	4층	2	173,855,000	309,859,091	30,985,909	514,700,000	25,735,000	25,735,000	51,470,000	411,760,000		
	5~9층	8	173,855,000	314,586,364	31,458,636	519,900,000	25,995,000	25,995,000	51,990,000	415,920,000		
	10~20층	11	173,855,000	319,404,545	31,940,455	525,200,000	26,260,000	26,260,000	52,520,000	420,160,000		
21층 이상	5	173,855,000	328,950,000	32,895,000	535,700,000	26,785,000	26,785,000	53,570,000	428,560,000			
95C	3136동 (1호) 3139동 (1호)	1층	2	173,895,000	290,822,727	29,082,273	493,800,000	24,690,000	24,690,000	49,380,000	395,040,000	
		2층	4	173,895,000	300,368,182	30,036,818	504,300,000	25,215,000	25,215,000	50,430,000	403,440,000	
	3층	4	173,895,000	305,095,455	30,509,545	509,500,000	25,475,000	25,475,000	50,950,000	407,600,000		
	4층	4	173,895,000	309,913,636	30,991,364	514,800,000	25,740,000	25,740,000	51,480,000	411,840,000		
	5~7층	12	173,895,000	314,731,818	31,473,182	520,100,000	26,005,000	26,005,000	52,010,000	416,080,000		
3137동 (1호) 3138동 (1호)	1층(T)	2	173,895,000	302,186,364	30,218,636	506,300,000	25,315,000	25,315,000	50,630,000	405,040,000		
115A	3133동 (4호) 3134동 (4호)	2층	2	210,999,000	367,273,636	36,727,364	615,000,000	30,750,000	30,750,000	61,500,000	492,000,000	
		3층	2	210,999,000	373,091,818	37,309,182	621,400,000	31,070,000	31,070,000	62,140,000	497,120,000	
	4층	2	210,999,000	378,910,000	37,891,000	627,800,000	31,390,000	31,390,000	62,780,000	502,240,000		
	5~9층	10	210,999,000	384,728,182	38,472,818	634,200,000	31,710,000	31,710,000	63,420,000	507,360,000		
	10~20층	22	210,999,000	390,546,364	39,054,636	640,600,000	32,030,000	32,030,000	64,060,000	512,480,000		
	21층 이상	10	210,999,000	402,182,727	40,218,273	653,400,000	32,670,000	32,670,000	65,340,000	522,720,000		
115B	3133동 (3호) 3134동 (3호)	1층	2	210,860,000	351,672,727	35,167,273	597,700,000	29,885,000	29,885,000	59,770,000	478,160,000	
		2층	2	210,860,000	363,218,182	36,321,818	610,400,000	30,520,000	30,520,000	61,040,000	488,320,000	
	3층	2	210,860,000	369,036,364	36,903,636	616,800,000	30,840,000	30,840,000	61,680,000	493,440,000		
	4층	2	210,860,000	374,854,545	37,485,455	623,200,000	31,160,000	31,160,000	62,320,000	498,560,000		
	5~9층	10	210,860,000	380,581,818	38,058,182	629,500,000	31,475,000	31,475,000	62,950,000	503,600,000		
	10~20층	22	210,860,000	386,400,000	38,640,000	635,900,000	31,795,000	31,795,000	63,590,000	508,720,000		
	21층 이상	10	210,860,000	397,945,455	39,794,545	648,600,000	32,430,000	32,430,000	64,860,000	518,880,000		

※ 상기 공급금액 표에 표기된 '1층(T)'의 경우 각 주택형별 테라스 세대를 말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층별, 구조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제세공과금(인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미포함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하는 단지(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선시공 되었으며, 비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을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금액 외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공정 진행상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추가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1층 세대 중 일부 세대의 경우 테라스 세대로 공급되며, 별도의 주택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세대와 함께 동일 주택형 및 동일 타입으로 공급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X. 기타 유의사항의 단위세대(p.26)'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중도금(15%)은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자력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정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95A	95B	95C	115A	115B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50%)	8	2	1	2	16
	기타 수도권 거주자(50%) (경기도 6개월 미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	8	2	1	2	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세대수의 3% 범위)	5	1	1	1	1	9
<b>합계</b>	<b>21</b>	<b>5</b>	<b>3</b>	<b>5</b>	<b>7</b>	<b>41</b>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 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 제한]</li>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li> </ul> </li> </ul> </li> </ul>

구분	내용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유의사항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은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대상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은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행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자격확인 제출서류 외에도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나 임양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임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임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임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임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화성시 1년 이상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경쟁이 있는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점자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기타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몰랑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나 임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10년 이상	20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1년 이상 5년 미만	10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사·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며,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부양가족 산정 시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li> </ul> 3)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ul>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청약신청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소유 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무주택) 미적용)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가점 구분		확인할 서류 등
		점수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10.1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3.04.1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하고,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와 경쟁하며,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와 경쟁합니다.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점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듈을 무효 처리합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 규모 이상의 예치기준금액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②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⑤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총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추첨제 100%가 적용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4) 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민영주택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및 청약 예치기준금액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입주자저축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참조)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IV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등

###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3.10.2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 앱</li> <li>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li> <li>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그린비아스타 1층 1035호</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3.10.2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3.10.25(수)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분양사무실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사무실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체는 자격확인 제출서류 외에도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절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바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속"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속]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속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속」⇒「공고단지 청약연속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6:0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상기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 상황에 따라 은행 지정별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등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인화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V 당첨자 발표 일정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3.11.01(수)</li> <li>확인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12.05(화)~12.07(목)</li> <li>(3일간,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탄레이크파크 자연&amp;e편한세상 분양사무실</li> <li>-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그린아스타 1층 1035호</li> <li>※ 사전방문예약제 운영 -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실(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01(수) ~ 2023.11.10(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고10일)</li> <li>-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li> <li>제공일시: 2023.11.0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ul>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li>•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회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본 아파트는 대규모주택개발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이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동일 청약통장으로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본 아파트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공급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홈페이지(www.elife.co.kr)에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주소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천에 참가하여 당첨된 분은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V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3.11.20(월) ~ 2023.11.23(목)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탄레이크파크 자연&amp; e편한세상 분양사무실</li> <li>-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그린비아스타 1층 1035호</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ul>
	일반공급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홈페이지(www.elife.co.kr)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 시 방문인원은 당첨자 본인(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합니다.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 분양사무실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어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여부,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자격검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적격여부 사전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홈페이지(www.elife.co.kr)에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별도 안내 예정)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천여부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제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청약 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 경과 후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의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 시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 이후 정당계약 체결 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 유형별 해당 자격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자는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수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녀 가 구 특별공급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b>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b>
	○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b>‘전체 포함’</b> 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또는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선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b>‘상세’</b>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b>‘상세’</b> 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공급신청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	•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b>‘전체포함’</b>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b>‘상세’</b> 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자는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b>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b>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b>‘상세’</b>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b>‘상세’</b> 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 추가 확인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b>‘전체 포함’</b> 으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분양사무실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전체포함’으로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  
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당첨자 발표일 이후 정당계약 체결 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b>‘전체포함’</b> 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b>‘전체포함’</b>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b>‘상세’</b> 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 유형별 해당 자격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명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사업주체는 정확한 자격검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li> <li>※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자는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b>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b></li> </ul>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li> <li>※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li> <li>•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li> </ul>
○	○	○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속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li> <li>※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b>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b></li> </ul>
○	○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건축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li> </ul>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li>※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3.12.05(화) ~ 2023.12.07(목)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탄레이크파크 자연&amp;e편한세상 분양사무실</li> <li>-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근교비아스타 1층 1035호</li> <li>-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방문예약제 운영</li> <li>-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li> <li>※ 사전방문예약 신청일정의 경우 추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li> </ul>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분양사무실 방문 시 부여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131동 101호 홍길동 → 313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자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세대별 해당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불입장)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자격검증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ul>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원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li> </ul>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li> </ul>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li> </ul>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본인	•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양식 게시 - 거래가격 6억원 이상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금액 포함)의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작성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명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재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실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을 포함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시는 당첨자분들께서는 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II)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세제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온라인 구매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계약서 포함)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사'로서 과세대상인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납부, 인지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절차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모집 신청(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절차를 어렵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홍보물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율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율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변경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러,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서 입주자대회의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기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신청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청약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액(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며,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검색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원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7.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전시공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하는 단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15%) 납입을 위한 중도금대출 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자력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인시대 등)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 등 어떠한 제한에도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는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상담을 하지 않으며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개인신용대출 불가 등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Ⅷ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 1.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

####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20%)	
		계약 시	잔금(80%) 입주지정일
95A	1,530,000	306,000	1,224,000
95B	1,170,000	234,000	936,000
95C	2,250,000	450,000	1,800,000
115A	1,990,000	398,000	1,592,000
115B	1,970,000	394,000	1,576,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분양사무실 방문 시 부여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131동 101호 홍길동 → 313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이 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외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단위세대 설계 당시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으며, 현재 공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은 선시공 되어 공급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세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I))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의 사유로 선 시공된 발코니 확장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이하 주택전시관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형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사이하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하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I))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하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추가선택품목(II)

#### ■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I)) 계약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 예정이며, 변경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추가선택품목(I))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 위치	설치대수	제조사	판매가격	비고
95A	거실+침실1	실내기2/실외기1	LG / 삼성	3,5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동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4/실외기1	LG / 삼성	5,580,000	
95B	거실+침실1	실내기2/실외기1	LG / 삼성	3,5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동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4/실외기1	LG / 삼성	5,580,000	
95C	거실+침실1	실내기2/실외기1	LG / 삼성	3,5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동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4/실외기1	LG / 삼성	5,580,000	
115A	거실+침실1	실내기2/실외기1	LG / 삼성	3,5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동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실내기5/실외기1	LG / 삼성	6,330,000	
115B	거실+침실1	실내기2/실외기1	LG / 삼성	3,5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동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실내기5/실외기1	LG / 삼성	6,330,000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 단지로 전 세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배관은 거실 및 전 침실 천장에 기본 매립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II)으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에 해당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가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에 해당되는 비용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수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II)의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실내기 및 실외기)은 LG, 삼성 중 선택이 가능하며 모델은 가전사별, 주택형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실내기 및 실외기) 미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용 냉매 배관은 거실 및 전 침실 천장에 기본 매립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주방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벽부형, 스탠드형 에어컨은 설치 불가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통지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2)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삼성	삼성 식기세척기 DW60T7065SS(12인용)	910,000	택 1
		LG	LG DIOS 식기세척기 DUB22SB2(12인용)	1,200,000	
		SK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화이트 DWA-90R5B(14인용)	1,390,000	
전기오븐	전 주택형	SK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 EON-B401SA	650,000	택 1
		SK매직	IoT 스팀 오븐 EON-B440SA	1,050,000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전 주택형	SK매직	2인덕션+1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ERAHF33L	850,000	택 1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 IHR-BQ40E	1,950,000	

- 빌트인 가전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중(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도어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기본 설계안대로 일반 수납장으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해당 부위는 기본 설계안대로 비어있는 공간으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 추가선택품목(II)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II)에 준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I) 공사비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약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중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분양사무실 방문 시 부여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약(가상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I)) 공사비 납부계약(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각 세대별 가상계좌(중호수마다 다름)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정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II) 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131동 101호 홍길동 → 313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추가선택품목(II)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 전 세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배관은 거실 및 전 침실 천장에 기본 매립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II)으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벽부형 및 스탠드형 에어컨은 설치가 불가하며, 입주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시 제조사 사양에 따라 설치비용 및 설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비, 간접비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선 시공되는 천장 냉매배관 공사금액은 추가선택품목(II)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선택방법, 약정, 상품상세 등)은 공급계약 체결 시 개별 안내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II)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상품(전자제품 포함)의 서비스 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계약체결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II) 공급계약이 불가(또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하며 추가선택품목(II) 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기재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중(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II)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부과 시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II)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설치위치,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중 시스템에어컨은 3년, 빌트인 가전제품(식기세척기, 전기오븐,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은 2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3. 마이너스 옵션

■ 유의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마이너스 옵션이 미적용되어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하는 단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한 중도금대출 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자력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로 가산됨)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보증수수료, 인지도 등)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 등 어떠한 제한에도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는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상담을 하지 않으며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개인신용대출 불가 등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추가선택품목(I), (II)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추가선택품목(I) 제외),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추가선택품목(I) 제외),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로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율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대출기관을 알선하여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약정된 납부일에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승인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IX 기타 계약자 안내

##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3. 입주예정일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단, 입주지정기간 말일 이전에 입주 시는 실입주일(월/세 수령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가족운동실,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그린카페, 독서실, 개인오피스, 키즈라운지 등

## 4.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제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제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방습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방습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전용보일러(다목)	-
	고효율 전동기(라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소풍용기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조명설치(다목)	조명기기 중 안전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대기전력차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가시,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차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가시 콘덴서 개수의 30%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건축물명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주 : 경기북부도시공사            건축(예정)일 : 2023.12.29            주소 : 경기도 동탄시 행정동 450-1번길 15-1 (동탄4차)            면적 : 203.921㎡ (60.99평) (평가 면적: 202.863㎡)            건축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보통건축사사무소</p> <p>인증 등급 : 녹색건축(준)인증            인증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54호, 환경부고시 제2019-096호, 인조기온 측정제치(2020.04.30))</p> <p>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02월 09일</p> <p>한국부동산원장</p>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 화성동탄1 1841호 주택예정입주            2. 신청 일자 : 경기북부도시공사            3. 대 지 적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1 1841호(예정입주) 내 ASHBL            4. 신청 용도 : 공동주택</p> <p>성능등급 : A등급</p> <p>2022년 02월 09일</p> <p>한국부동산원장</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b></p> <p>건축물명 : 화성동탄1 1841호 주택예정입주            건축주 : 경기북부도시공사            건축(예정)일 : 2023.12.29            주소 : 경기도 동탄시 행정동 450-1번길 15-1 (동탄4차)            면적 : 203.921㎡ (60.99평) (평가 면적: 202.863㎡)            건축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보통건축사사무소</p> <p>인증 등급 : A등급</p> <p>2022년 02월 09일</p> <p>한국부동산원장</p>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험, 인증 기관협의 등의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7.2m	2.3~2.7m	2.7m

**6.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 호	㈜유탄엔지니어링, ㈜대명기술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명기술단	㈜대명기술단	㈜건일엔지니어링
금 액	7,140,936,682	1,313,961,955	1,129,588,776	1,825,697,586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7. 사업주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구분	공공시행사	민간사업자			
상 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곡선복지길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코오롱)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9, 207호(건건동)
법인등록번호	130171-0000052	110111-7736808	110111-0036502	110111-0134877	110111-0101287

※ 본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디엘이앤씨(주), 코오롱글로벌(주), 금호건설(주), 신동아종합건설(주))가 공동사업체로 시행하며, 분양계약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공사

구분	시공사			
상 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코오롱)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9, 207호(건건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736808	110111-0036502	110111-0134877	110111-0101287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67,986,030,659	공사비	철근콘크리트공사	89,514,359,300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4,399,414,000	
	기간이자	11,517,468,359		용접공사	-		공조설비	2,586,906,000	
	그 밖의 비용	13,793,387,569		조적공사	1,491,377,000		난방설비공사	3,524,152,000	
	필요적 경비	4,391,987,913		미장공사	4,924,001,000		가스설비공사	1,017,898,000	
	<b>계</b>	<b>197,688,874,500</b>		단열공사	6,360,828,000		자동제어 설비공사	782,244,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6,789,100,000	방수, 방습공사		2,919,205,000	특수설비공사	263,607,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4,716,850,000	전기설비공사	14,699,538,000
		비탈면보호공사		209,737,000	가구공사		11,932,441,000	정보통신공사	12,578,952,000
		옹벽공사		154,638,000	금속공사		4,849,574,000	소방설비공사	17,141,350,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538,841,000	승강기공사	5,067,389,000
		우수, 오수공사		772,712,000	창호공사	13,085,522,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1,003,688,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333,678,000	이윤	7,380,715,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4,089,867,000	<b>계</b>	<b>313,008,893,300</b>	
		도로포장공사		762,839,000	돌공사	7,508,338,000	설계비	7,713,711,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2,910,706,000	감리비	15,350,918,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2,462,398,000	부대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2,310,605,000		
	건축	조경공사	10,460,883,000	수장공사		12,183,293,000	분담금 및 부담금	4,397,703,000	
		부대시설공사	2,804,778,000	주방용가구공사		6,534,379,000	보상비	-	
		공동가설공사	4,635,636,000	잡공사		4,007,301,00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566,434,000	
		가시시설물공사	5,157,337,000	급수설비공사		7,826,975,000	<b>계</b>	<b>30,339,371,000</b>	
지정 및 기초공사		1,416,131,000	급탕설비공사	7,547,574,000	그 밖의 비용	<b>55,337,761,200</b>			
철골공사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3,661,742,000	<b>합계</b>	<b>596,374,900,000</b>				

• 흙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됨.

##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11,517,468,359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2,322,435,219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4,391,987,912		인텔리전트설치비	31,651,071,700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2,617,799,431		구조형식 가산비	2,047,826,661
	말뚝박기 공사비	1,456,270,385		공동주택성능등급	2,772,578,745
	암석지반 공사비	8,045,157,426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5,150,828,938
	지역난방 부담금	1,674,160,327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649,765,800
	택지비 가산항목 계	29,702,843,840		외관특화공사비	5,442,268,500
		법정초과조정	2,178,204,592		
		후분양이자기간	3,122,780,972		
		건축비 가산항목 계	55,337,761,127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X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사항

#### ■ 청약 및 계약 전 확인사항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 아파트로 마이너스옵션이 미적용되며, 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계약체결 후 해당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을 72.74%) 단지로 전 세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배관을 거실 및 전 침실 천장에 기본 매립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II)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미선택 시에도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벽부형, 스탠드형 에어컨은 설치 불가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VR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인·허가 및 설계 관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순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단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장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모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VR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부출입구 구간에 단지 내 차량 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를 위한 공공보행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보행로에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등 공공시설물이 이전 설치될 예정이며 아파트 계약 시 공공보행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2호(2022.06.30.)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8차),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제2022-564호(2022.10.0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1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화성동탄(2)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광고 홍보안내물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VR, CG,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및 단지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동탄역(고속철도), 국지도82호선(경기도로), 국지도23호선(용구대로) 등의 주간선도로망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역은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위험물 처리시설(주유소 등), 급급처리시설(케이블헤드 등) 등의 공공시설이 존재 또는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북측으로 전기공급시설(직선거리 약 1.8km)과 단지 남서측으로 전기공급시설(직선거리 약 1.4k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유통업무시설(직선거리 약 900m), 단지 남측으로(직선거리 약 900m) 복합물류센터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랑정)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단지 동측으로 근린공원, 남측으로 근린공원 및 장치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해당 공원 시설물(야간조명, 운동시설 등) 및 해당 시설 이용자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과과의 거리와 레벨차로 인해 저층 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잡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접 세대 및 저층 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동측으로 단독주택용지, 단지 북측으로 공동주택(A938L)이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동측으로 골프장(직선거리 약 1.4k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직선거리 약 2km)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보원센터,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당해지구 동탄2측에 화성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1.9km, 총용 681-246, 일일 16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건식 사료화 및 일일 157톤 규모의 음식물 혐기성소화설비)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니 이에 대하여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신주거문화타운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과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지구 내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민간분양-공동분양-행복주택-국민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10m 보행자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층 및 인접 세대는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지 주변은 주출입구 구간 20m 도로, 부출입구는 24m, 주변 12.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이용 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소음 등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린공원 사이 옹벽거리 3136동 약 7.5m, 3137동 약 4.5m, 3138동 약 6m, 3139동 약 5m 이격으로 근린공원과의 사이가 인접해있어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관련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체제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면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택지개발된 대지에 계획된 공동주택으로 주변 레벨 현황에 맞춰 계획되어 단지내 단차가 다소 발생하였으며 진입통로가 계단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단지 현황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바랍니다.

■ 입주 관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개별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방경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사비만 주택전사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변 선초도 변경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풍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관련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이슬초등학교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단, 화성고교지구지역의 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당해지구 내 신선행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체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등은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고교지구지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이거나 초등돌봄 수요가 없는 등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이거나 초등돌봄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국공립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영구저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식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등 게시판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지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연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당첨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이버 주택전사관 등을 통하여 단지 내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하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계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자는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중앙광장, 그린카페,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주출입구 문주,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용 설비기,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며,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공급계약 체결 전 설계관련 도서 등을 통하여 해당 진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체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연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중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기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관계부서(화성시 고시(제2019-233, 2019.10.30.) 준수)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부출입구에는 아파트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대지면적에는 가감속차로로 인한 공공보행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보행로는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공공의 보행자들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공공보행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계약자로부터 징구받을 예정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계단실 창에는 망입유리가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문주,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면특화를 위하여 3132동, 3147동 서남측 일부 면에 유리마감제(커튼월) 및 물딩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설치위치에 따라 마주보는 일부 세대 또는 인접 세대의 경우 빛반사 등에 따른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외부에 적용된 커튼월 및 인면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유리모듈,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와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대선이 설치되며,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기계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이동하여 설치 할 수 없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진입 후 회전차로(교통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단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 방식은 아파트주동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라멘구조, 지하주차장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라멘구조입니다.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기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밀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VR모형도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1층~지하 2층 및 지상 1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린카페,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실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연결되어 있음에 사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145동과 3148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해당 동 세대는 소음 및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옥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칭 및 위생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3132, 3133, 3134, 3135, 3141, 3142, 3144동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발전기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주민이 부담합니다.
- 「기간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3132동, 3139동, 3143동, 3144동, 3146동, 3148동)/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3132동,3139동,3143동,3144동,3146동,3148동), 지하 2층(3134동 PIT,3139동 통신실,3142동 PIT,3144동 통신실), 지하 3층(3132동 통신실,3146동 통신실)]
-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 장비는 본 공사 시 동호수 변경에 따른 변경과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의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비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내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드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랑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당 1개소씩, 총 18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패드가 설치됩니다.(현재 한전패드는 3148동 남서측에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여부가 입주인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차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차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사이버 주택전시관, 설계관련 도서 등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1, 2의 분리로 인해 주차장도 분리되어 있으며, 총 장애인 주차 2대, 일반형 주차 7대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1 주차대수는 장애인 주차 1대, 일반형 주차 5대, 근린생활시설-2 주차대수는 장애인 주차 1대, 일반형 주차 2대로 계획 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동 외벽 마감은 석재마감(중수 및 위치 상이함)과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되며,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간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밀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중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들, 지하 시설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143, 3144, 3146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131동, 3140동, 3145동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크구간과 인접하여 차량의 입,출차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계획된 셸프 차량 정비 공간은 공간만 제공된 것으로 별도의 제공되는 장비가 없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 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2189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3136, 3137, 3138동은 동측 근린생활 공원과 인접하여 있어 공원 이용객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145동 옥상부에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하부 세대는 방문객 입실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각 모든 동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스킵 형태로 계획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들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 중앙광장, 부대시설 등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은 소음,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 하우스는 3145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3145동 최상층(18층 1~4호 세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최상층은 소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145동 상부에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E/V가 있으며, 중동 E/V는 스카이라운지로 직접 접근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상 시에만 코어#2 E/V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 바랍니다.(3.4호 세대에 설치되는 E/V입니다.)
- 단지 내 유아놀이터가 3132동 남서측, 3131동 남동측으로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3133동 남서측과 3132동 남동측으로 1개소, 3135동, 3136동 남측에 1개소, 3142동, 3137동 남측에 1개소, 3141동, 3138동 남측에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132, 3133, 3146, 3147동 사이에 중앙광장과 그린카페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차가 나는 데크 구간에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통행 동선에 주민공동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동은 해당 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착세동기 등의 응급장비를 동당 1개소(매립층, 총 18개소), 경량당 1개소(스탠드형), 커뮤니티시설 1개소(스탠드형) 설치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다목적 창고는 입주 후 CS관리를 위해 약 2년동안 CS사설물로 사용되며 그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이관하여 아파트 시설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비 및 유지비용은 공용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3년 9월말 기준 공정률 72.74%)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I), (II)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단,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에 따른 예외의 경우는 공고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또는 설계관련 도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장류, 가구류 바닥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은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감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보조주방 및 실외기실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적용부위 내용은 평형 타입별 평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입 등)의 경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나 본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으며, 미선택이 불가합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출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보존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 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TV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장(해당 주택형)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절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출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박막,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상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현성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열선 세대가 아닌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합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창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의,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대부분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사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 CS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창고 또는 다목적실 공간을 통한 CS센터로 2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률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사이버 주택전시관 또는 기타 홍보물 상에 표기된 이미지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테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방문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공급계약 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거쳐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권리는 입주인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속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보도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미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의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유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속, 조정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중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장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기계실, 전기실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팬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팬 가동 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진동, 소음 등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마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진입 레벨 차로 인해 단지 내 레벨차가 있음을 확인 바랍니다.

■ 아파트 주동

-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창용 구조물,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132동, 3139동, 3143동, 3144동, 3146동, 3148동 옥상층에는 옥외안테나가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는 3148동 옥상에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방범용 동체 감지기는 지상 1층, 2층, 3층,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재,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선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통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1층, 1층과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상이합니다.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실외 노출 복도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등 휴게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어 우천 시 비 물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1층 출입문에는 외기 미세먼지 차단용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에어커튼 작동 시 기류도달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는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제습기와 배기팬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시되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및 가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경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강석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육실 /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으며, 육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시장은 이중 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시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튼캡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오픈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또는 설계관련 도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동 시,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배열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은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체 내용은 평형별, 주택형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 장 덮임 또는 측면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감지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의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에어컨 개별 설치 시 벽부형 및 스탠드형 에어컨은 설치가 불가하여 천장형 에어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사 사양에 따라 실내기 위치, 설치비용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여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꼴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및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나, 1층에 세대 가 있는 2층의 경우는 설치가 됩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월 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을 참조하시어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체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나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와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체 특성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2, 침실3, 침실4(민영주택 115A, 115B 해당)의 외기면 벽체와 만나는 내부 벽체 모서리에는 도배하자 방지를 위한 줄눈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현관에 인접하여 계획된 대형수납공간은 비난방 구간이나, 일부 세대는 결로 저감을 위한 온수 코일이 바닥에 설치되며 대형수납공간만 별도로 제어는 불가합니다.
- 115A(민영주택에만 해당)의 현관 대형수납공간은 구조상 별도의 온수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나, 이 점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등 발코니 공간에는 별도의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74A, 84A, 95A(민영주택) 타입은 다용도실 바닥에 인접한 드레스룸의 경로를 저감을 위해 온수코일 1개 라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난방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난방효율이나 타 세대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및 욕실도어에는 손개인 방직장치가 설치되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목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토퍼, 등)와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우물천장의 깊이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아트월(디자인월), 디자인패널 등 패널류의 마감재 나누기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및 일반 기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주방기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배치, 동선, 복도폭, 수납량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타일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는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타일 자체의 컬러나 문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배기 시스템은 소음저감을 위한 팬비행형 렌지후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분리행형은 다용도실 천정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분리행형의 유지관리는 제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주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 상부 물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차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엔지니어드스톤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벽부형 및 스탠드형은 사용할 수 없으며, 거실 및 전 침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사용을 위한 냉매배관이 시공되어 있으며,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배관은 천장형 기준으로 단위세대 거실 및 전 침실 천장과 반자 사이에 노출배관으로 설치됩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일부 세대 제외)에 설치될 예정이며, 피난상황이 아닌 임의로 하향식 피난구 개방 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림 경보가 울리게 됨)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 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 단차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한국전기설비규격 KEC 232.84)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장 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발코니 및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차함,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상)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래킷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식탁용 팬던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식탁용 전등은 다운라이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냉장고 등 가전용 콘센트 위치는 각 타입의 냉장고장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일부 타입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양면기 배수배관은 배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호칭경 100mm 저수음관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인입을 위해 커튼박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실외기실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됩니다.
- 기타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분양사무실 내 비치된 설계관련 도서 등을 참조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AI 플랫폼 서비스로 스마트 e-life 앱을 통한 제어 및 Ai스피커(미지급 항목)를 통한 제어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부 지원되지 않는 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1층 세대(3137동 및 3138동(101호, 102호), 3140동 및 3141동 및 3142동(101호, 102호, 103호, 104호), 3144동(102호, 103호, 104호)는 테라스가 설치됩니다.
- 테라스 세대의 경우 테라스 바닥 마감은 외부용 바닥타일로 시공되고, 거실 발코니 난간대는 시공되지 않으며, 테라스 외곽에 사생활침해, 보안상의 이유로 난간이 설치됩니다.
- 테라스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 세대에서 일부 보일 수 있어 사생활침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는 본 공사 시 세부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CG 등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는 대지지분 및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소유의 면적으로 공부 상에 등재할 수 없으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 세대의 테라스는 설계계획 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층 등의 지붕층으로 다른 세대에서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은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합니다.
- 테라스는 구조상 전유부(소유부)가 아닌 세대 거실측 하부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지붕층을 테라스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시설물 설치 등 점유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구조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무단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구조 변경 및 마감재 변경, 추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세대는 상부세대 낙하물, 테라스 진흙임 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또는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위 한 내용을 매매(분양권 전매 포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향후 입주한 제3자가 다른 입주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테라스 세대와 인접한 세대(연접세대, 상층부 세대, 해당동 및 인접동 등 포함)에는 소음, 빗공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테라스는 설계상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부 1층 세대가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타 입주자들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테라스로 지정된 구간에는 별도의 급수 및 우수/생활 배수 배출을 위한 배관은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구간의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우수 전용 드레인 배관만 설치됩니다.
- 테라스 구간 우수 전용 드레인 배관은 테라스 및 외벽에 노출되어 시공되고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구간 우수 전용 드레인 배관에 입주자가 우수 또는 생활 배수를 방류해서는 안되며,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전적으로 해당 세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반형 906대, 확장형 654대, 장애인 68대(총 1,628대(환경친화적자동차\_과금형 콘센트 72대 포함)) 및 전기차 충전시설 20대(급속 2대, 완속 18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으로의 진입이 불편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자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에 따라 주차장 3개층이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상 각 동별로 주차공간이 균일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자연환풍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출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름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3143, 3144, 3146동 사이)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실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불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헬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VR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가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에어컨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점검시 연료펌프 성능시험으로 인해 냄새, 매연, 소음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지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에서 부과됩니다.
- 지하층에는 입주자 편의를 위한 계절창고 공간이 계획되어 제습기 및 배기팬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공간만 제공되며,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협의체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통행은 지하 2, 3층만 택배차가 진입 가능하며 지하 1층은 진입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사이버 주택전시관내 VR모형도(단지 조정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서 현장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는 실제 건립세대(Mock-up 세대) 촬영영상(국민주택 84A, 84C, 민영주택 95A 타입만 해당) 및 평면도(촬영영상 미제작 타입)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품목 목록 또는 디스플레이(DP)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전기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추가선택품목(II)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동영상 및 사진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정,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현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확정형으로 시공되었으나 PVC 창호, 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공사과정 중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자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건보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주택전시관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황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스, 세대VR, VR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홈페이지**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 문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그라비아스타 1층 1035호 ☎031-378-122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